중소기업청

중소기업 제도 확 바뀐다!

환경 · 입지규제 등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의 양과 강도가 차별화 되고, 중소기업 범위개편으로 사실상 대기업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질 전망이다. 다만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.

▶ 문 의 :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(042-481-4537)

1.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향

■■ 경제구조의 변화, 업종별 규모의 경제,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기준 조정

○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조정 및 업종별 분류기준 단순화

○ 관계회사제도 도입하여 규모가 큰 계열관계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, 유예기간 횟수제한 등 실질적 대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

○ 자산총액, 자기자본 등에서 기업규모가 커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제도를 확대

[기대효과] : 2,0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대 및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되며 비정규직고용 확대, 인위적 분사 등 중소기업 유지를 위한 불합리한 경영관행 개선

2.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

■■ 규제도입시 규모별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화

○ 각종 법령 등의 불균형 · 불합리한 부담여부를 중소기업 입장에서 검토하는 미국식 "중소기업 규제유연화 제도"의 도입

* 미국은 '규제유연화법' (Regulatory Flexibility Act), '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' (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)을 통해 업계의견 반영, 비용편익분석 등 기업규모 · 부담역량별로 규제 영향을 사전 검토 의무화

○ 각 부처는 새로운 규제 도입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실시를 제도화하고 중기청은 각 부처 규제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제시

[기대효과] : 같은 규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가 기대되며 미국수준의 제도 이행시 GDP비율로 추정한 한국의 연간 규제비용 절감효과는 약 7.43억달러(7,800억원) 예상

3. 창업초기기업에 법인 유지비용 감축

■■ 창업초기기업의 각종 등록세 면제

○ 창업 초기기업이 창업 이후 4년 이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 (조특법 개정)

○ 창업 이후 4년 이내 법인에 대해서는 ①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(조특법 개정), ② 변경등기 등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 · 안내 강화

[기대효과] : 자본금 증자시 등에 등록세 부담 약 200억원 (06년 262억원) 감축 및 와 법무사 등 등록 서비스 이용비용 약 150억원의 절감 예상

4. 수요자중심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 구축

■■ 중소기업 정책의 단순화 및 정보전달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중소기업 불편 감소

○ (온라인 · 오프라인 한국형 비즈니스링크 구축)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서비스 수혜

- (온라인)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단일창구(single-window)에서 안내하고 지원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- (오프라인) 지방중기청 직원을 기업별 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지방중기청의 기업애로해소 서비스 기능 강화

○ (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 · 단순화) 지원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자금 또는 지원창구를 통합하여 운영

- 개별 부처별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성 · 실효성 등을 평가 · 점검하여 필요시 사업통합 또는 창구 통합 등을 추진

* 사업집행 공기업의 선진화 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

[기대효과] : 중소기업의 정책접근성 및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활용도 제고

중소기업청

2009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선도과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.

중소기업혁신개발 사업 및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의 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▶ 문 의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6)

1. 사업목적 및 개요

■■ [기술혁신개발사업] : 개별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, 고부가가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

■■ [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] :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,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기술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지원

○ 위 두 사업은 모두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· 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,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으로,

- 단기간내(2년 이내)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에 대해, 전체 개발사업비의 75%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정부출연금 지원(25%는 기업부담으로 추진)

※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(총사업비의 7.5%이상은 현금부담)

2. 수요조사 분야

①지정공모 : '08년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 고부가가치 유망기술로 도출된 50개 분야의 263개 조사 대상에 대해 제안

※ 지정공모 '263개 대상목록' 은 www.smtech.go.kr 공지사항 참고

②자유응모 : 별도 기술 분야 등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희망하는 유망기술을 자유롭게 제안

3. 제안자격 및 결과 활용

■■ 제안대상 : 제안은 누구나 가능하며, 지정된 '2009년도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제안서' 양식을 사용

■■ 결과 활용계획

○ 제안된 '수요조사 제안서'는 산 · 학 · 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며,

○ 검증결과 우선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의 경우, 2009년도 {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} 및 {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}의 선도과제 신규지원 대상 공고과제에 반영

4. 접수기간 및 방법

■■ 접수기간 : 2008년 9월 16일(화) ~ 10월 31일(금)

■■ 접수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접수

■■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신청

☞ http://www.smtech.go.kr/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신청 → 제안서 내용 입력

5. 문 의 처

■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: 02-6009-8211~6 / 8222~5

■■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: 042-481-4451 / 4446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통해 확인

-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: http://www.smtech.go.kr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http://www.smba.go.kr